

수출거래추가약정서(D/A 포페이팅(Forfaiting)거래)

■ 개정 시행일: 2023년 1월 9일(월)

■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의 적용여부: 미적용

■ 주요 변경 내용: 국제 경제제재로 인한 결제 불능 상환소구 추가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 1 조(적용범위) ~ 제 3 조(상환의무가 없는 경우) (생략)	제 1 조(적용범위) ~ 제 3 조(상환의무가 없는 경우) (좌동)	
<p>제 4 조(상환의무가 있는 경우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수출환어음의 인수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수출환어음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1 ~ 7 (생략)</p> <p>8. 신설</p>	<p>제 4 조(상환의무가 있는 경우)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(좌동)</p> <p>1 ~ 7 (좌동)</p> <p>8. 거래상대방, 상대은행, 상대국가, 운송회사 등 거래 관련인이 UN, 미국, EU, 영국 등의 국제 제재 대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되어 수출대금이 미결제되는 경우</p>	국제 경제제재로 인한 결제 불능 시 상환소구 추가
제 5 조(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 등) ~ 제 8 조(기타 특약사항) (생략)	제 5 조(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 등) ~ 제 8 조(기타 특약사항) (좌동)	